

[첨부]

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 】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 4 조(유가증권시장 <b>주식워런트증권의 기본예탁금 납부</b>) ① <b>주식워런트증권의 보유잔고가 없는 고객이 주식워런트증권</b> 거래를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대용증권(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b>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(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 대응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제 1 항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예탁총액이 기본예탁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없는 경우에는 예탁총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.</b></p>	<p>제 4 조(유가증권시장 <b>주식워런트증권 등의 기본예탁금 납부</b>) <b>고객이 다음 각 호의</b> 거래를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대용증권(한국거래소의 규정에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&lt;삭제&gt;</p> <p>1. <b>주식워런트증권의 보유잔고가 없는 고객의 주식워런트증권 거래</b></p> <p>2. <b>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 배를 초과한 배율(음의 배율을 포함한다)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·상장지수증권에 대한 매수주문</b></p>	<p>거래소 유가증권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및 순번 삭제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부 칙</p> <p>이 약관은 2020년 9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.</p>	<p>부칙 추가</p>